

법령 정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 2024. 7. 3.] [법률 제19916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 제조방법 ·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 · 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시행 2024. 7. 3.] [대통령령 제34663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 · 제조

방법 ·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6. 7. >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 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뜻

등

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함하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

른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5. 축산물의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 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

의 인증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

정하여 고시한다.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Food 식품안전나라

1. 질병의 예방 ·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질병 또는 질병군(疾病群)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

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

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먹거나 튜브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 ·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섭취대상자의 질병명 및 "영

양조절"을 위한 식품임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2)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사항을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예방 ·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

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거나 안전성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서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 · 광고

나.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라.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

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성분의 기능 및 함

량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

나.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특수영양식품(영아 · 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 · 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

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 ·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부 · 노약자, 질병 후 회복 중인 사람 또는 환자의 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표시

라.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에 있는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개발된 제품이라는

Food 식품안전나라

4. 거짓 · 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 · 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 · 광고

1) 「식품위생법」 제3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5조 및 제20조

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라.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 광고할 때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 · 작용 · 효과 · 효능에 관하여 표

현하는 표시 · 광고

마. 정부 또는 관련 공인기관의 수상(受賞) · 인증 · 보증 · 선정 ·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

하는 표시 ·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학 · 영양학 · 축산가공학 ·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나 발견

한 사실을 인용하거나 명시하는 표시 · 광고. 다만, 식품학 등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Foo 식품안전나라

· 표기금액은 원·달러로 표기 · 표기된 원·달러는 원·달러를 구하기やすく 표시 · 표기

다. 각종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한방(韓方)",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

사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혼탁하는 표시 · 광고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 공인 · 추천 ·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

·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마. 외국어의 남용 등으로 인하여 외국 제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바. 조제유류(調製乳類)의 용기 또는 포장에 유아 · 여성의 사진 또는 그림 등을 사용한 표시 · 광고

사. 조제유류가 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할 수 있는 표시 · 광고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사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표현함으로써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 · 광고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

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 · 광고

차. 이온수, 생명수, 약수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표시 · 광고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카. 해당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

Foood 식품안전나라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 ·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비교표시 · 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않은 내용의 표시 · 광고

나. 제품의 제조방법 · 품질 ·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이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또는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표시 · 광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 · 광고는 제외한다.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가.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의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 사진 또는 음향 등을 사용하는 표시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Food 식품안전나라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조리 · 판매 · 제조 · 제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같은 영

제2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官能検査)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

· 광고

식품 등의 표시 ·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30.] [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일부개정]

제8조(광고의 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을 광고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 6]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 개정 2024. 1. 12. >

1. 식품등을 텔레비전 · 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 · 가공 · 처리 · 판

할

관청에 허가 · 등록 · 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

할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Food 식품안전나라

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는 제외한다], 영 · 유아의 이유식 또

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 · 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신문 · 잡지 · 라디오 · 텔레비전 · 음악 · 영상 · 인쇄물 · 간판 · 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

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 · 모자보건시설 · 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4. 부당한 표시 ·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담당부서 사이버조사팀

연락처 043-719-1936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

Food 식품안전나라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Copyright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ll Rights Reserved.

통합망 고객지원센터(시스템문의) : 1899-5590,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유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오늘 하루 사용하지 않음